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87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강경숙 · 차규근 · 서왕진
임호선 · 신장식 · 김준형
황운하 · 김재원 · 정춘생
김선민 · 백선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부모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악의적 아동학대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차원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악성민원 신고자의 행위가 무고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교원이 법령에 따라 정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제출”을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고되어”를 “신고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악의적 아동학대 민원(이하 “악성민원”이라 한다)이 제기되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악성민원을 제기한 자의 행위가 「형법」 제11장(무고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및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 및 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한 경우에는 민사상·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활동 등의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되는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등) ① ----- ----- ----- ----- ----- ----- ----- ----- -----신 고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아 니한 반복적·악의적 아동학대 민원(이하 “악성민원”이라 한 다)이 제기되어----- ----- -----.
<신 설>	② 교육감은 악성민원을 제기 한 자의 행위가 「형법」 제11 장(무고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및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 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